

# 5

## 가지 사항 뉴욕 시 인권법에 따른 차별적 괴롭힘에 대해 알아야 할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이웃에서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가족에게 외국어로 말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습니까?*

차별적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협, 협박, 괴롭힘, 강압 또는 폭력을 말합니다.

- 개인의 시민권 또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하는 괴롭힘 및
- 실제 또는 심리적으로 인식된 대상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장애, 또는 외국인 또는 시민 신분 또는 기타 보호 신분 등이 부분적인 동기가 되는 괴롭힘.

- 1** 차별적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인권 위원회에 차별적 행위를 신고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위원회에 전화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당국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2** 모든 사람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처럼, 뉴욕 시의 모든 사람들도 차별적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웃, 길거리에서 공격하는 사람, 또는 버스 동승자도 이러한 종류의 차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공격자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보호 신분 범주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극을 받은 경우에도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 3** **익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차별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인권 위원회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4** 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인권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학대나 괴롭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도록 차별적 괴롭힘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5** 인권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차별로 발생한 지출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정서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위원회는 가해자가 민사상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에서는 차별적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종, 피부색, 종교/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체류 신분 또는 기타 신분 등과 같은 보호 신분을 이유로 타인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폭력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 212-416-0971번으로 전화하셔서 인권 위원회에 도움을 (NYC Commission on Human Rights)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뉴욕 시 인권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